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퇴역자의 예비역 편입) ①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(이하 “퇴역자”라 한다.)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퇴역자가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없다.

③ 예비역으로 편입된 퇴역자는 「병역법」 제72조 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. 다만, 본문의 정년을 이미 초과한 퇴역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④ 「병역법」 제72조 제1항에 따른 연한을 초과한 예비역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정년 이내에서 매년 신청에 따라 연장하여 복무하거나 중도에 퇴역할 수 있다. 단, 전시, 사변, 기타 긴급한 군사상 필요 등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정년을 초과하여 연장 복무할 수 있다.

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신청, 제4항

에 따른 연장 복무 또는 중도 퇴역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절에 제60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32(재심사 기간의 기산) 법 제54조의4제6항 전단에서 “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)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·의결을 하여야 한다”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법 제54조의4 제1항제1호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「민법」상 재산상속인의 재심사 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
2. 법 제54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하였으나,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「민법」상 재산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재심사 개시를 고지할 수 없는 경우
3. 감사원 및 군검찰·군사경찰, 국방조사본부(전사망민원조사단)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
4. 기타 이외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진행에 있어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

제62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자원동원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21
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	
연 락 처	(02) 748 - 3091